

**‘전장연 방지법’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문성호 의원 외 16명

나. 의안번호 : 제2795호

다. 제출일자 : 2025. 05. 26.

라. 회부일자 : 2025. 05. 29.

2. 주 문

- 일명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운행방해와 역사 점거 등 불법적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3. 제안이유

-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이 일부 극단적 장애인 단체의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역사 무단 점거로 인한 시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함

- 현재 「철도안전법」에서는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러한 무질서 및 점거와 동반된 폭력 사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소극적으로 대응됨에 따라 적절치 못한 억지력 확보가 대두된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조속한 ‘전장연 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원안가결

- 지하철 정시운행 및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함

5. 이 송 처

가. 대한민국 국회

1) 도시철도과-6976(2025.6.4.)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도시철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열차 운행 방해나 역사 점거 등과 같은 무질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것임(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참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발 의 자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외 11인	
발의/회부일	2025.4.28. / 2025.4.29.	
소관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발 의 내 용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제11호 신설, 제79조(벌칙)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나. 검토의견

-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약 66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을 포함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통근 및 통학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서울 지하철의 원활한 운영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철도안전법」 제47조와 제48조 등²⁾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 등이 출퇴근 시간대 열차운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는 지하철 이용시민과 운영기관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전장연의 무단 점거 행위 외에도 역사 내 직원 폭행, 설비 파손, 열차운영 지시 방해 등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동 건의안은 현행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철도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도시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이에 국회 및 정부는 동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도시철도 운영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에서의 반복적 불법행위와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별첨자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생략) ② (생략)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② ~ ⑤ (생략)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하여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u>제4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u> 2. <u>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